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04

발의연월일: 2022. 1. 7.

발 의 자 : 이해식·김민철·김영배

박재호 • 백혜련 • 서영교

서영석 · 오영훈 · 윤후덕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4억원 이하(수도권기준)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그 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 세 경감 제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음.

예컨대, 2021년도에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 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금액도 실지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계층 간 불형평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서민·실수요자의 주거복지 지원 대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를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5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억 5천만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억 5천만원을 초과"를 "3억원을 초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
|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
|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 |
|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 |
| 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 | |
|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 | |
| 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 |
| 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 |
| 없는 경우로서 <u>합산소득이 7천</u> | <u>합산소득이 1억원</u> |
| <u>만원 이하</u> 인 경우에는 그 세대 | <u>이하</u> |
| 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 |
|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 |
|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 | |
| 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u>3억원</u> | <u>5억원</u>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
|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 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
| 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 | 한다) |
| 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 |
|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
|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 |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 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 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만원을 <u>초과</u>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한다.
 - ② ~ ⑥ (생 략)

- 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 ② ~ ⑥ (현행과 같음)